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사결과의 인사혁신처 통보〉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42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2. 16.
3. 회 부 일 : 2024.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결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사혁신처의 인사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3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징계 및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음(제32조 및 제33조 등). 또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정비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제34조).¹⁾
- 개정안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의 모순이 있는 등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감사 결과 징계 사유 또는 인사행정상의 모순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감사 결과를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에게도 함께 통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안 제35조의2 신설).

1) 「감사원법」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5조의2(감사 결과의 인사혁신처 통보)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징계가 “파면”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게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징계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감사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이러한 소속

2) 「**감사원법**」 제32조(징계 요구 등)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이하 “징계위원회등”이라 한다)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그 밖의 징계위원회등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

장관 등의 징계 절차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³⁾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그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징계 절차가 감사원의 징계요구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감사원이 인사혁신처장에 게도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하도록 할 경우,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의 징계 절차의 운영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감사원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이 법 제32조에 따라 징계 요구 대상이 되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선 요구 대상이 되는 ‘인사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취지를 가지고 있는 규율 내용을 하나의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인사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 사항인 ‘법령상

다. (이하 생략)

- 3)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에 포함⁴⁾되는 것으로,⁵⁾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개정안과 같이 '징계사유' 및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별도 통보 규정을 두는 것은 이 법에 따른 감사 결과 처리 체계와⁶⁾ 어울리지 않고, 개정안의 내용은 개정안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성이 낮으며 현행 제도로도 해당 문제 상황은 개선 가능하다는⁷⁾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감사원법」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5) 지금도 감사원이 감사 결과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개선 사항이 법령이나 인사행정 등에 관한 사항일 경우 이 법 제34조에 따라 소관 기관인 인사혁신처장에게 개선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임.

6) 감사원이 설명하는 이 법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 체계란 “감사원은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적정한 권한을 가진 기관장 등에게 처분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이 법 ‘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에 확립된 감사 결과의 처리 체계”임. 감사원은 개정안이 ‘징계사유’,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인사혁신처가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감사 결과의 처리 원칙·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7) 감사원은 개정안을 ‘인사자료 통보’ 제도를 개선하여 감사원이 적발한 비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판단함. ‘인사자료 통보’란 통상 비위행위자의 소속 기관 등에 하고 있으나, 퇴직자, 정무직 등 징계요구 대상이 아닌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비위행위자가 향후 공직에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적정한 인사권 행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임.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사원은, 안 제35조의2에서 감사원이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한 사항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감사원의 ‘인사자료 통보’ 제도와 관련이 적음에도, 개정안과 같이 모든 ‘징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또한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은 비위가 아닌 제도·법령 등에 대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는 관련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55